

의안번호	2215603
의 퇴 인	김석기의원
회 답 일	2026.2.20.
추계번호	25B7070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정기적으로 폐철도부지의 활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5년마다 폐철도부지의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21억 7,3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36억 900만원 (연평균 7억 2,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실태조사 (안 제6조)	2,173	-	-	-	-	2,173	435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7조)	-	1,436	-	-	-	1,436	287
합계	2,173	1,436	-	-	-	3,609	722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 (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폐철도부지의 활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철도부지의 종류별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1. 폐철도부지 활용 정책의 기본방향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폐철도부지의 활용 현황과 전망 3. 「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상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 4. 대부, 매각 등 폐철도부지의 활용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3	안 제9조 (활용사업계획의 승인 등)	시장등은 관할구역에 있는 폐철도부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활용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활용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폐철도부지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장등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활용사업계획을 작성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활용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3항) 1. 활용사업의 명칭,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활용사업의 대상지역·위치 및 그 면적 3. 활용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4. 활용사업의 시행기간 5. 폐철도부지 주변지역의 특성 및 토지이용현황과 개발계획 등 여건 분석 6.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7. 활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폐철도부지의 이용방법 8. 활용사업의 추진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9.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0. 그 밖에 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시장등은 활용사업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4항)	의무규정
4	안 제10조 (폐철도부지의 매입)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폐철도부지의 매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에 따라 폐철도부지를 매입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이 폐철도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철도계정을 사용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폐철도부지 매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5	안 제11조 (활용사업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등이 제1항의 요청에 따라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폐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 제27조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검토 요청 등)	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혹은 양여할 수 있음(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등이 제1항의 요청을 받고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폐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매각할 수 있음(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재산인 폐철도부지가 3회 이상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해당 폐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폐철도부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미리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4항)	재량규정 재량규정의무규정
6	안 제14조 (양여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타부지인 폐철도부지의 대부, 매각, 교환이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폐철도부지를 관광시설 또는 주민복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5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사용허가 받은 폐철도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군계획사업 시설, 공작물 및 「건축법」 상 건축물 등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음(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재량규정
8	안 제18조 (재정지원)	국가는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용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 현행법령과 제정법 조문 비교

- 제정안 중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표 2] 제정안과 현행법 비교표

연번	제정안	「국유재산법」
1	안 제15조제2항 (영구시설물의 축조) - 기부조건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하 고, 해당 시설물 무상 사용허가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기부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제34조(사용료의 감면) -기부조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면제

- #### □ 현행 법령에 따라 실시중인 조문을 제외하고, 제정안에 따른 재정수반 조문 현황과 추계 사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6조 (실태조사)	○	•(추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사업비를 추산함
2	안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추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사업비를 추산함
3	안 제9조 (활용사업계획의 승인 등)	×	•(제3호) 철도유희부지를 활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동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수, 국토교통부의 승인건수 및 사업규모·범위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4	안 제11조 (활용사업계획 수립 검토 요청 등)		

연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5	안 제10조 (폐철도부지의 매입)	×	• (제3호)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외 소유의 철도 유희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 구체적인 매입대상, 매입면적 및 연도별 매입계획 등이 나타나지 않아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확정하기 곤란함
6	안 제14조 (양여에 관한 특례)	×	• (제3호) 국가가 폐철도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활용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무상양여 조건의 충족 대상 사례의 수, 대상 폐철도부지의 면적 및 감정평가액, 재정지원의 대상·보조율·단가·연차별 규모 등이 대통령령 및 향후 사업계획 확정·예산 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시점에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철도유희지 활용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실적은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7	안 제18조 (재정지원)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정기적으로 철도유희부지의 활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에 따라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비는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화되지 않아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
- 「철도 유희부지 활용지침」 제4조¹⁾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유희부지

1) 「철도 유희부지 활용지침」

제4조(조사 및 관리계획의 수립)

②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은 제3조의 분류기준에 따라 철도 유희부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3월 말까지 분류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국가철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철도 유희부지에 대한 분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류 결과와 철도 유희부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유희부지의 주변지역 개발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실시한 「철도 유희부지 전수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비는 21.7억원으로 나타남

－ 국가철도공단은 2022년 전수조사 실시 후 매년 자체 조사를 통하여 해당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있음

-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유희부지 활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방법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해당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유사사례 실태조사 실시현황을 참고하여 철도유희부지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주기(5년)를 고려할 때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연도는 현행과 같이 공단 내 인력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3] 유사사례 연구용역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년도	사업명	공고기관	사업비
2022	철도 유희부지 전수 실태조사	국가철도공단	2,173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조달청 나라장터

□ (안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유희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철도부지의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경우 연구용역 사업비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아, 2022년 국가철도공단이 실시한 「폐선구간 폐시설물 철거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사업비를 유사사례로 참고함

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철도 유희부지의 활용여건이 변화되거나 기타 재분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철도 유희부지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일단의 토지 면적이 3,000㎡를 초과하거나 공시지가가 10억 원 이상인 철도 유희부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국가철도공단은 신규 철도건설 및 철도개량 등으로 철도 폐선부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철도 유희부지 활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 4] 유사사례 연구용역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년도	사업명	공고기관	사업비
2022	폐선구간 폐시설물 철거 및 활용방안	국가철도공단	1,436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조달청 나라장터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정기적으로 폐철도부지의 활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5년마다 폐철도부지의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21억 7,3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36억 9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실태조사와 활용계획 수립 시점이 불확정적이거나, 철도유희부지 활용 및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폐철도부지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5]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실태조사 실시	2,173	-	-	-	-	2,173
기본계획의 수립	-	1,436	-	-	-	1,436
합계	2,173	1,436	-	-	-	3,609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철도유희지 주요 지원사업 실적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선정연도	지자체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백만원)	지원 기관
2022	영주시 산림녹지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1,500	500	산림청
2022	안동시 관광진흥과	원도심~월영교 테마화거리	15,700	7,850	문화체육관광부
2022	울산시 북구청 도시과	북구 하나로 어울길 조성사업	41,630	16,465	산림청
2022	부산 기장군 문화관광과	좌천역 폐선부지 기후대응 도시숲	38,200	10,000	산림청
2022	군산시 산림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20,000	10,000	산림청
2022	익산시 늘푸른공원과	미세먼지 차단숲 및 오산 도시숲	3,300	1,650	산림청
2022	군산시 도시재생과	광장 및 놀이터 조성	1,550	900	국토교통부
2022	광양시 건설과	섬진강 매화공원 조성사업	924	647	농림축산식품부
2022	연천군 지역경제과	다시 그대로(路) 경원선	2,613	426	기획재정부
2022	영천시 공원관리사업소	치유경관숲 조성사업	1,000	500	산림청
2022	익산시 늘푸른공원과	오산면 기후대응 도시숲	4,000	2,000	산림청
2023	영주시 공원관리과	실외정원 조성사업	500	250	산림청
2023	포항시 그린웨이추진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2,000	1,000	산림청
2023	김해시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20,000	10,000	산림청
2023	익산시 녹색도시조성과	인화동 기후대응 도시숲	4,000	2,000	산림청
2023	부산진구 교육체육과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	24,000	12,000	행정안전부
2024	영천시 공원관리사업소	북안면 임포마을 실외정원	500	250	산림청
2024	영천시 공원관리사업소	기차없는 임포역 철길숲	500	250	산림청
2025	광양시 관광과	힐링예술로(路) 조성사업	7,500	2,950	문화체육관광부

선정연도	지자체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백만원)	지원 기관
2025	연천군 경제교통과	경원선 기후대응 도시숲	26,500	10,050	산림청
2025	춘천시 관광정책과	강촌 피암터널 관광자원화	2,000	600	국토교통부
2025	군산시 산림녹지과	도시바람길숲 확대 조성사업	13,200	6,600	산림청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